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소 방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양 권 석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이 동의안은 2009년 12월 7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09년 12월 9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

2. 제안이유

-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집중적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직급 책정협의(3급, 한시)가 행정안전부로부터 협의됨에 따라
- 현재 균형발전국 T/F로 운영중인 '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단'을 독립기구로 설치하고, 관련 사무를 이관 조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局단위 한시기구 설치⇒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단 (안 제5조)
 - 본청기구 : 1실 7국 1본부⇒1실7국1단1본부(+1단)
 - ※ 기한 : 2010.12.31까지 (직제순은 문화관광환경국 다음으로 조정)
- 분장사무 이관 (안 제9조, 안 제13조의2)
 - 균형발전국 ⇒ 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단
 - 생명과학단지내 국책기관, 대학 등 유치에 관한 사항
 - 생명산업 육성을 위한 박람회 등 추진에 관한 사항
 -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지원에 관한 사항
 - 오송신도시, 오송생명과학단지 조성에 관한 사항

4. 검토의견

가. 본 개정조례안은

충청북도의 당면한 정책 현안과제인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성공적 조성을 위하여 局단위 한시기구로 첨단의료 복합단지 기획단을 2010.12.31일까지 신설·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첨단의료 복합단지 조성지원에 관한 행정사무는 지난 9월 21일 균형발전국에 2과 7팀을 설치하는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한 사항임.

나. 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단 설치는

정부가 지난 8월 10일, 대한민국의 미래성장동력인 첨단의료 복합단지로서 '충북 오송'과 '대구 신서' 지역을 공동 지정함에 따라 두 지역간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함.

정부가 첨단의료복합단지를 복수로 지정한 것은 단지간의 경쟁과 특화를 통한 성과 노출이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라고 생각됨.

따라서, 성공적인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을 위하여 타 지역과 차별화되는 핵심 인프라 구축, 다양한 인센티브 지원 등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처를 위한 전략수립이 요구됨.

다. 주요 개정내용은

□ 局단위 ‘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단’ 설치

- 현행 1실 7국 1본부에서 1실 7국 1단 1본부로 局단위 기구로 설치
 - 균형발전국장 겸직체계를 해소, 직제는 문화관광환경국 다음
- 운용기간 : 2010. 12. 31.까지 한시기구¹⁾로 운영

□ ‘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단’ 사무이관

- 현행 균형발전국 소속의 2과 7팀 29명을 이관

현 행	개 편
<p><균형발전국> (6과 20팀 92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균형정책과 (3팀 17명) • 지역개발과 (3팀 15명) • 교통물류과 (3팀 16명) • 건축디자인과 (4팀 16명) • 총괄기획과 (4팀 16명) • 조성지원과 (3팀 12명) 	<p><균형발전국> (4과13팀64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균형정책과 (3팀 17명) • 지역개발과 (3팀 15명) • 교통물류과 (3팀 16명) • 건축디자인과 (4팀 16명) <hr/> <p><첨복단지기획단> (2과7팀29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괄기획과 (4팀 17명) • 조성지원과 (3팀 12명)

- 이관사무는
 - 생명과학단지내 국책기관, 대학 등 유치에 관한 사항
 - 생명산업 육성을 위한 박람회 등 추진에 관한 사항
 -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지원에 관한 사항
 - 오송 신도시, 오송생명과학단지 조성에 관한 사항

1)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8조(한시기구의 설치운영)

- ①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기간 후에 끝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운영. 이 경우 기존의 인력을 최대한 활용
- ② 기존의 직제로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의 중요성과 업무량임
- ③ 최소한 1년 이상의 업무량임, ④ 존속기한은 3년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함
- ⑤ 존속기한 연장은 1회에 한함

라. 종합의견

금번 개정안은 그동안 검토를 하고 있던 균형발전국 소관 첨단의료복합단지조성 지원업무를 신설 부서로 이관함에 따라 과대국인균형발전국의 과대업무를 해소를 함.

첨단의료 복합단지 조성 마스터플랜과 의료산업 관련 국내외 기업 및 연구기관 유치 등에 총력을 기울이고, 중앙정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한 집중적이고 성공적인 지원체계를 위하여 첨단의료 복합단지 기획단을 신설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한시기구를 설치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도정 현안을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려는 개정 취지에 이견은 없음.

다만, 정부는 첨단의료복합단지조성을 2038년까지 30년간 총5조6,000억 원을 투자하는 장기계획을 가지며, 2012년까지 단지를 조성한다고 발표하고 있음.

충청북도의 '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단'은 정부의 장기계획에 의해 추진하는 것과는 다르게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을 1년으로(2010년 12월 31일까지) 운영하는 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충청북도의 기구설치기준은 9개 실국본부를 두도록 「지방자치 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하고 있는데 한시기구를 설치하여 10개 실국본부를 설치·운영하는 것에 대하여 설명이 요구됨.

붙 임 :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